

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
확대 시행('24. 1. 27.)

원스톱 중대산업재해 예방 무료상담



원스톱 중대산업재해 예방 무료상담

어떻게 운영되나요?

- 운영기간** 2024년 9월 25일 ~ 사업종료시
- 상담시간** 매주 수요일 14:00 ~ 17:30 ※ 공휴일 미운영
- 상담장소** 부산광역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
- 신청대상**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, 근로자 등
- 상담방법**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1:1 상담
- 상담내용**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, 산재예방 지원사업 등
- 신청방법** 온라인 ▶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(견학/체험)
- 문의** 부산시 일자리노동과 ☎ 888-6431 ~ 6432

신청과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?

1 사전예약

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상담 사전신청(선착순)
 *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 (reserve.busan.go.kr)
 ▶ 견학/체험 ▶ 원스톱 중대산업재해 예방 무료상담
 * 상담일 전주 월요일 09시부터 상담일 전일 화요일 24시까지 신청

2 상담진행

신청 내용에 대해 전문가 상담
 * 신청자별 최대 30분 상담(설문조사 포함)

3 후속지원

※ 지원요건 해당 시
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
 지원사업 연계 지원



연계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나요?

✓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

사업개요

- 위험성 평가중심의 『자기규율 예방체계』를 구축할 수 있도록,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기관에서 컨설팅(3회~5회) 제공

지원대상

제조·기타업종

상시근로자수 5~49인 사업장
 (50~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)

건설업종

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
 종합건설업체, 전문건설업체



지원규모

- 사업장 규모별 비용 부담 차등 적용

구분	자부담 부과 없음	자부담 부과		정부부담금 (자부담과는 별도)
		(수수료 3만원/회)	(수수료 12만원/회)	
제조업 등	근로자수 5~29인	근로자수 30~49인	근로자수 50인 이상	60만원/회
건설업	종합 1천위 초과 전문 200위 초과	종합 301~1천위 전문 20~200위	종합 201~300위 전문 20위 이내	

※ 2024년 기준 지원내용으로 향후 변동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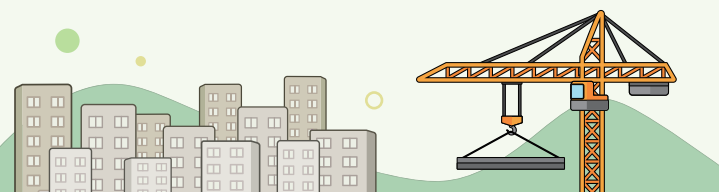
지원방법 및 문의

- 지원방법 :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
- 문의전화 :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 ☎ 520-0510



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
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▶ 안전보건교육, 공동안전관리자, 클린사업장 조성, 건강디딤돌 등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행



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Q&A

식당·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?



-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.
※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
-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·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※ 50인 미만 사업장(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)은 '24. 1. 27.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

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


중대산업재해 범위

- 산업재해로 인한 중사자(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)
 -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
※ 사고사망 및 질병사망 모두 포함
 -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 -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

처벌내용

-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
 -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(병과 가능)
 - 부상·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- 법인
 -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
 - 부상·질병 10억원 이하 벌금



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?

-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.
-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·기구,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 및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.

안전보건관리체계란?

✓ 안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

- ▶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·이행하고,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.

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

경영자 리더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·목표 설정 ●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·게시
안전보건 인력·예산 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안전·보건 조직·담당자를 지정하고, 권한과 책임을 부여 ● 안전·보건 예산 편성, 용도에 맞게 집행
유해·위험 요인 파악·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·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등을 통해 유해·위험요인 파악·개선에 대한 근로자 참여·공유 ●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취회 절차 마련(안전보건 제안제도, 아차사고 신고,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) ● 도급·용역·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
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·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·점검 ● 산재사고,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 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·평가

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 받게 되나요?

- 무조건 처벌 받지 않습니다.
-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·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.

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?

-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.
※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식 준용
- 이때, 근로자는 기간제, 단시간(아르바이트생)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.
※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

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이 있나요?

- 50인 미만 기업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기업규모별 지원내용 상이
-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·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·신청할 수 있습니다.
(대표전화 ☎ 1544-1133)
※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·지원 가능
- 부산시는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사업주 단체, 협회 등을 대상으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공동지원하고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처벌법 누리집 (www.koshasafety.co.kr) 참고

- ▶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,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, 교육영상, 업종별 자율 점검표 등

